51-80-건설1월 1904.6.17 2:41 AM 페이지64

수차례 도급 사업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

- 누가보험가입자이고「민법」상손해배상책임은누가지는가 -

A는 건물 신축 공사를 하면서 B사에게 보일러의제작및설치부분을맡기고, B사는보일러제작은사업장 내에서직접수행하되 설치 부분에 대해 C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B사는C사와하도급계약과정에서 보험료의납부를인수한다는계약을서면으로체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승인을 받았다. C사소속근로자인‘ 갑 ’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다.‘ 갑 ’에 대한 산재 적용에 있어 누가 보험 가입자(사업주)이고,「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누가지는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민법」상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그상대방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보수를지급할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하며 일을 맡은 사람을수급인이라고한다.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의사업을도급받아행하는자를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하수급인이라함은원수급인으로부터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도급받아행하는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도급받아행하는자를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조제4호).

적용 사업주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사업이수차의도급에의하여행하여지는경우에는그원수급인을이 법의적용을받는사업의사업주로한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의하여근로복지공단이이를승인하는때에는그하수급인을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의사업주로본다 ’고규정하고있다.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전체사업을하나의적용단위로해서 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특히, 하수급인이 맡은 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보험관계를성립시키고자할때에는원수급인이 당해하수급인과서면형식으로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체

51-80-건설1월 1904.6.17 2:41 AM 페이지65

결하고, 그서면계약이성립한날로부터14일 이내에 ‘ 하수급인보험료 납부 인수 승인 신청서 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14조).

이처럼 승인을 받게 되면 당해 하수급인은 그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 등의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 있어서는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선 최고를청구할수있으나, 당해하수급인이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는다.

보험료 납부 인수 승인 및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 제1항 단서의규정에의하면보험료납부인수에관한 건설업관련승인요건은다음과같다.

①하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건설업면허를받거나등록한자일것
②하도급 공사의 도급 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일것
③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것
④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보험료 납부의인수에관한서면계약을체결할것
⑤원수급인이하수급인의보험료미납부에 연대하여책임진다는각서를제출할것
⑥하수급인의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것

원수급인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하수급인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수급인 보험료 납부 인수 승인 신청서에 도급계약서 사본,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각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 및인수승인 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원수급인및하수급인에게결정 · 통지하여야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또한, 하수급인인보험가입자가법에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관계를유지할수 없다고인정될때에는하수급인의보험료납부인수에관한승인을취소할수 있다(동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 인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하수급인인 보험 가입자 및 원수급인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동법제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

근로자가취업중사고를당하게되면치료비와근로를하지 못하여발생한임금손해및기타재산적손해와정신적인고통이 수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는불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민사상손해배상제도라한다. 따라서, 산업 재해를당한근로자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산재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를상대로민사상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고서도 「민법」상 손해배상을생각하는것은일반적으로산재보험급여액보다민사 소송을통한손해배상액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근로자에게지급된보상액만큼은사용자가책임을면하게된다. 따라서, 「민법」상의손해배상액을 계산할때에는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휴업 급여, 장해 급여 또는 유족 급여등은공제된다.

한편, 수차의도급사업의경우손해배상에대한책임소재가문제가된다. 원칙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당해 수급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재해의 발생 원인이 원수급인의 지휘 · 명령과 관련된 경우에는 원수급인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즉, 도급 공사의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실제상 하수급인이나그의피용인인근로자에대하여 지휘 ·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물을수있다. 이경우배상책임의분담은안전배려의무의분배이론에의해야한다(대판1972. 1. 31, 71다2370).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음 제기한 사례에 대해 답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의경우B사는보일러제작및설치부분에대한업무의완성을약정하고그 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민법」상도급이라할수있으므로 도급인은 A가 되고, 원수급인은 B사가 되며, 하수급인은C가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인B사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을받는사업의사업주이나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C사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사업주가된다.

따라서, 근로자‘ 갑 의 유족은 C사를 보험 적용 사업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및장의비를청구하면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갑을 직접 고용한C사를상대로청구하면된다.

다만, 근로자 갑이 원수급인인 B사의 지휘 · 명령에 의해 근무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B사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을청구할수 있다.

홍승암
우정노무법인노무사